

대구지방법원 2022. 1. 12 선고 2021가단12824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

담당변호사 이동현

변 론 종 결 2021. 12. 15.

판 결 선 고 2022. 1. 12.

주 문

1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16. 4. 8.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, 피고는 C에게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6. 4. 12. 접수 제5928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

원고가 C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자로서 피고와 C 사이에 2016. 4. 12.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이를 취소하고, 원상회복으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.

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, 피고와 C 사이에 2016. 4. 12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9,200,000원, 채무자 C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고,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, 원고는 2016. 4. 25. 대구지방법원 2016카단30705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원고, 청구금액 83,270,500원인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인정되고, 원고는 2016. 4. 12.부터 5년이 경과한 2021. 9. 3.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,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의하여 채권자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,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원고는 2016. 4. 25.경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사실을 알았다고 보여질 뿐만 아니라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.

2. 결론

그렇다면,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.

판사 이지민

별지